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부해외인턴사업 등에 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신설〉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5883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정부해외인턴사업 등에 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신설	2

I. 개요

1.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88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재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26.

(3) 회 부 일 : 2024. 11.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려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외 인턴십 사업 등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해외 인턴십 사업 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정부해외인턴사업 등에 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가구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인재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8호 및 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u>수급자</u>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u>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 ----- ----- --제2조의2에 따라 수급자-- -----<후단 삭제>

9. ~ 11. (생략)

<신설>

9. ~ 11. (현행과 같음)

제2조의2(개별가구의 구성) ①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이 경우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인재양성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제21조에 따른 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

	<u>상이 되는 수급자</u>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 (생략)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② ----- -----

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 5. (생략) 6.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u>시장·군수·구청장</u>”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7.·8. (생략) ③ (생략)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 -----<u>시장·군수·구청장이</u>----- ----- ----- 7.·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¹⁾으로 하고, 개별가구(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음.

다만, 기초수급 보장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예외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용,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가구원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사람을 정하고 있음.

<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시행령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법 제21조에 따른 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 중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을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① 체류자에 대한 개별가구 제외 조치는 장기 체류자가 부당하게 공적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② 체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개별가구 제외 조치는 외국에 체류하면서 단기간의 입국 후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기존 시행령 조항은 ①의 사례와 같이 장기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개별가구 제외 조치를 실시하였는데, 2022년 개정²⁾으로 ②의 사례와 같이 장기 체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개별가구 제외 조치가 추가되었음.

2) 대통령령 제32711호(2022.6.21. 일부개정)

< 동법 시행 제2조제2항제2호 개정 내용 >

구분	기존	2022.6.21. 개정 (6개월 후 시행)
기준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해 60일 초과 외국에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
변경 내용	(장기체류기준 강화) 90일 초과 → 60일 초과로 강화, 및 체류 경험 추가 * 외국에 체류하면서 단기간 입국 후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	

□ 이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 사업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단원으로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이후 귀국할 경우, 약 4개월 가량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함.

□ 이에, 개정안은 현행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가구 범위 및 제외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을 정함에 있어,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등의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해당 참여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개별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급자 선정기준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 동 개정안은 청년 기초생활 수급자가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및 참여 종료 이후에도 기초생활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배려층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급 자격 유지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외국 체류자에 대한 개별가구 제외 규정은 해외에서 장기 체류 하면서 공적 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사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 등에 대하여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KOICA 봉사단의 경우, 해외 체류 기간 및 귀국 후에 별도의 지원금³⁾을 받으므로, 해외 체류 기간에 참가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목적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다만, 체류 종료 이후에도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 자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LH 임대주택 등 제도에 대한 신청 자격이 중단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 및 탈수급 촉진 등을 감안하여, 해외 인턴십 사업 참가자에 대한 외국 체류 기간 완화(90일)하여 적용 중이고, 지침 개정('23.10)을 통해 참가자를 포함한 수급가구의 의료급여 특례⁴⁾(【참고】참조)를

3)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한 일반단원에게는 원활한 국내정착을 돕기 위해 활동기간 동안 매월 60만원을 적립하였다가 귀국후 국내정착지원금이 일시불로 지급됨.

4)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67~69p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제외한 남은 가구원만으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참가자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면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가구원에게 의료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참가자에게 의료급여 자격 부여

시행 중이며, 특례 대상을 해외봉사단 참여자까지 확대하였음.
이러한 지침 개정이 법률의 개정보다 단기간 내에 지원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개별가구의 범위 및 제외 범위는 현재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경우 보장범위의 확대 등 탄력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장범위의 성격에 따라 법률에 규정될 사항과 시행령으로 규정할 사항을 구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별가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동 법률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성은 일응 타당하나,

가구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현재와 같이 시행령을 통해 보장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은 시행령의 자체의 법률로의 상향 규정 방안 이외에 입법취지인 정부의 단기 해외 프로그램 참여 등은 개별가구 산정에서 배려할 수 있는 일반적 예외 조항의 신설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 검토)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별가구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개별가구에 대한 세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 대상 확대 등 탄력적 운영을 저해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해외봉사단과 해외인턴십 사업 참가자에 대해서만 참가 기간을 외국체류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은, 외국 체류자의 부당한 급여 수령을 방지하고자 한 당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해외취·창업자 등 타 해외체류자와의 형평성에도 반함.

- 또한,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의 경우 균등한 기회 제공과 탈수급 촉진을 위하여 외국체류기간 90일 초과 시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수정) 전북·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존재하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안 제2조의2는 시군이 없는 단층제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적용되도록 수정이 필요함.

- 안 제2조의 2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로 수정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	정부해외인턴사업 등에 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	-----------------------------------

□ 적용대상

- 정부 해외인턴사업에 참여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 대학졸업 필수과목인 해외실습에 참여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 기업·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목적의 해외인턴 사업 참가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 해외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출국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에 참여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 선정기준

-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가구원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특례 운영방법

-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의 해외체류 91일 제부터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모든 급여에 대해 보장중지
- 가구원수 변동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사항은 반영(해외인턴 등 참가자의 소득이 가구 소득에 반영된 경우 동 소득은 제외)
-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포함한 가구원 수 기준으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참가자에게 의료급여 자격 부여

※ 가구원수가 축소되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든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참가자에게 의료급여 자격 부여

□ 소득인정액 반영 방법

- 해외체류 정부지원금, 인턴취업 소득, 항공료·체재비 등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교환학생 재학 중 각종 소득은 산정에서 제외